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203313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케이

담당변호사 나은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혁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8. 12. 선고 2024가단13286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 내지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에 기재된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들은, 피고 D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실제로 이용한 바도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제'란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상, 이를 업무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최형철

판사 선의종